

食品法의 國際的 傾向

調　　查　　部

I. 序　　言

食品法은 元來 粗惡品을 掃滅키爲하여 發動되었다. 舊時代의 사기食品販賣商代身에 今日大企業의 食品製造業者, 都賣業者가 進步된 食品工業技術과 販賣技術을 驅使하여 責任있는一定食品標準下에 營業하고 있다. 時代의 變遷에 따라서 食品法도 變化하지 않을 수 없다. 近來 食品法의 重要關心事는 食品의 安全性, 標準化, 識別, 品質, 艾爾, 廣告등에 關한 規範을 作成하여 購買者(消費者)에게 알리고 그들을 保護하고 誠實한 食品交易의 바탕을 마련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法律은 나라에 따라서 그 構造가 相異하다. 美國의 法律은 所謂 水平的 構造를 갖이고 一般的의 性格을 띠고 모든 食品에 適用되도록 되어 있지마는, 歐羅巴大陸 다른 나라의 法律은 所謂 垂直的構造로 되어 있어 品目에 따라 個別의으로 取扱되고 있다. 後者의 境遇는 한 品目에 關한 法律의 全部가 法典中 한帳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쉬운 利點이 있으나 禁止條項이 많은 傾向이 있고, 또 새로운 品目이 生產되어도 法律에 個別의인 明文規定이 나올때까지 販賣하지 못한다는 缺點이 있다.

다른 나라의 法律을 哲學的으로 理解하는 것뿐만 아니라 自己의 生產品이 그 나라에서 市場化 할수 있는가를 法律上으로도 確認하는 것이 重要한 問題라고 하겠다. 輸出對象國의 法律에서 規定된 條件에 符合되지 않는 生產品을 輸出할려고 하는 일은 時間과 勞力의 浪費가 되는 것이다.

消費者의 利益을 保護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은 人間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法律形態中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工業化된 社會에서 今日과 같은 國家的法律系統이 確立된 것은 19世紀以後의 일이다. 오늘날 世界의 모든 先進國은相當히 複雜하고 精巧한 國家의 食品法을 갖이고 있다. 法律은 아우리 精巧하게 역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時代의 變遷에 따라서, 不斷히 進步發達하는 技術의 革新을 생각할때 恒常 改正의 必要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世界到處의 新生國과 開途國들이 지금 이 瞬間에도 基礎的食品法作成過程에 있으며 食品統制方式導入의 過程에 있는 것이다. 이때에 이러한 나라가 念頭에 두어야 할點은 自國의 利益擁護의 領域에서, 더 나아가서 世界食品市場의 一般的 與件에 符合하는 食品法을 判定하여야 한다는 點이라고 본다.

世界各國의 食品法改正 理念의 二大潮流를 区分하여 보면, 其一은 世界의 貿易自由化 運

動에서 크게 論議되는 非關稅技術障壁의 하나가 되어있는 各國의 相異한 食品法上의 障碍를 除去하여 統一的 標準을 設定하려고 하는 國際的 標準化의 方向이고 其二는 漸高하는 食品公害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하려고 하는 消費者保護의 方向이다.

II. 貿易自由化를 為한 技術障壁 除去의 觀點에서 본 食品法

(1) 1968年 7月 以來 歐洲共同體(EEC)

各國의 農產品에 賦課되던 關稅와 數量制限을 撤廢하였고 이 政策은 드디어 其他 모든 生產品을 對象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關稅와 數量制限(_qty制)이 없는 商品의 國際的流通이라는 것은 劃期的인 轉換입에 틀림없으나 關稅와 數量制限에 關係없는 各國의 相異한法律의 諸規定이 아직도 貿易自由化를 障碍하는 技術障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今日 世界先進國의 큰 關心事는 如何히 技術障壁을 除去하느냐 하는 問題이고 各種의 努力이 不斷히 進行되고 있다. 食品法에 있어서 이 觀點에서 特히 問題가 되는 點은, 食品의 成分, 製造方法, 包裝및 텁별의 方式에 關한 諸規定들이다.

(2) 製造, 成分, 添加劑使用

各國의 食品法을 살펴보면 國際貿易自由化的 重要한 障碍는 製造方法과 成分에 關한 諸規定에서 緣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도록 나라에 따라서 法이 相異한바가 있다는 點이다. “食品”에 對한 共通的定義를 規定하는 일은 理論的 操作面에서는 興味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實際行動面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貿易自由化的 目的을 為하여 確言할 수 있는 點은 共同體內 各國의 法律은

모든 商品(食品을 包含)이 各國에서 平等한待遇를 받을 것을 保障하는 統一된 原則을 確立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한 國家內의 諸規定은 共同體의 그것으로 代置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共同體의 法規가 그대로 萬能的役割을 하는 것은 아니고 従來의 技術的 規定과 傳統的 慣習을 補完 矯正하는 役割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食品法의 圓滑한 運用을 期할려면 消費者, 都賣業者, 製造業者の 啓蒙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3) 國際的 食品標準의 制定運動

各國이 渴望하고 있자마는 아직 實現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食品의 國際的 標準化問題이다. 地域的標準이 그 地域外의 나라이 對하여 많은 困難한 制約을 加하고 있는 例를 볼 수 있다. 歐洲理事會의 諸規定, 世界農業機構(FAO)의 地域標準에 關한 諸規定이 現在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다져질 것이다. 모든 나라가 結局은 國際的標準規約을 受諾할 것이지마는 局地的 偏見 때문에 完全制定까지 이르는 路程은 決코 平坦한 것은 아니다. 困難이 크면 클수록 誕生하는 新規約은 더욱 強力한 効力이 있을 것이다.

(4) 食品標準規約(Codex Alimentarius)

1958年에 歐洲食品標準委員會가 設立된 以來迂余曲折끝에 1961年 世界農業機構(FAO)와 世界保健機構(WHO)가 合同으로 管掌케됨으로서 急進展을 보게 되었다. 世界的 많은 나라가 食品의 國際的標準問題를 中心으로 넓은 對話의 廣場을 갖일 수 있게 되었다. 1962年에 食品標準規約委員會(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을 設立, 다음해에 第一回總會를 開催, 現在 參加國數는 74個國에 이르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消費者保護를 爲한 食品法의 國內問題도 많은데 國際的 水準의 食品標準의 設定을 急히 서둘르는 데에 對하여 疑問視하는 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食品의 國際的標準設定의 다른 한面의 意義를 看過하여서는 않된다. 即 貿易自由化를 爲하여 輸出國이 必要로 하는 程度에 뜻지 않게 輸入國側에서 輸入製品의 安全性, 健全性을 保障받기 爲한 必要性이 擡頭되고 있는 것이다.

III. 消費者保護의 觀點에서 본

食品法

(1) 食品法의 一義的인 關心事

消費大衆의 安全이고 다음이 個別의 消費者를 사기로부터 保護하는 일이다. 安全性은 健康上의 問題임으로 衛生, 食品添加劑, 色素材料 殺虫劑殘滓等에 關한 것이며, 사기 問題에서는 成分 包裝 텐트 虛偽說明等을 다루게 된다.

(2) 品質管理問題

日本의 경우 食品法의 大宗인 “食品衛生法”에서도 品質管理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品質管理는 規制보다도 製造業者の 自律的인 努力에 맞기고 있는 셈이다. 實上高를 올리려면 品質이 좋아야한다는 理論인 것이다. 지금 日本國內各界各層에서는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의 未備를 들고 일어나고 있다. 日本國民의 食生活은 海外輸入品依存度가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 農林省管下의 食品 輸入(例, 肉類酪農產品, 飼料)의 경우 1966年度 輸入額이 41億弗에 達하고 있으며 日本總輸入의 43%를 占하고 있다. 1950年に 制定된 日本農業標準法(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Law JAS)

을 輸入食品에도 適用시키기 爲한 改正案이 國會에 上程中이다. 또 法令 第52號에 牛乳 및 酪農品의 精密한 標準規定도 갖추게 되었다. 日本國內의 또 하나의 頭痛끼리는 現在 358種에 達하는 食品添加劑의 許可品問題이다. 美國의 같은 範疇種類에 比하면 너무도 많은 種類의 添加劑가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許可된 添加劑中 28種은 外國에서는 禁止品이라 한다. 이 事情은 色素材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어서 外國의 禁止色素材料가 그대로 使用되고 있는 形便이다.

(3) 殺虫劑 및 食品衛生學

殺虫劑殘滓는 國際的 水準에서 添加劑 보다 더 複雜하고 어려운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또 食品標準規約委員會의 作業中 가장 어려운 일은 食品衛生學問題를 國際的水準에서 如何히 다루는가 하는 問題이었다. 世界各國政府의 主要關心事는 食品의 人間消費에 對한 適合性을 保障하는 措置를 取하는 일이었다.

(4) レッル標識(Label)

英國의 경우 レッル標識은 食品レッル標識規定에 依하여 規制되고 있는데 이 改正法은 1973年 1月부터 發効되었는데, 그 制定까지에는 오랜 時日이 必要하였다. 또 慣習法에 依하면 모든 輸入肉類는 包裝위에 官廳의 證明書를 附着하여야 한다. 또 法에 依하여 造作도 아니고 상상적인 것도 아닌 特有의 名稱을 갖기고 있어야 한다. 大部分의 食品은 그 合成分을 明示하여야 하되 菓子類에 屬하는 食品은 除外한다. 製造業者の 住所姓名이 表示되어야 하며 商標만 表示하여서는 않된다. 魚類에 對한 疑心스러운 名稱은 이 法에서 새로 命名되었다.

歐洲共同體(E.E.C.)의 경우도 レッル標識에

關한 詳細한 規定을 갖이고 있다. 食品添加劑의 種類는 템플위에 表示되어야 하며 消費者는 食品이 如何한 添加劑를 含有하고 있는지 를 알權利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肉類 또는 肉類製品위에는 國家獸醫廳(The National Veterinary Board)의 承認을 거친 마크 또는 템플標識이 附着되어야 한다. 그 目的은, 첫째, 原產地國家의 公式檢査에서 그 肉類가 人間消費에 適合하다는 證明이 되는 것이고 둘째, 스웨덴으로 輸出함에 適合한 屠殺場에서 나왔다는 證明이 되기 為한 것이다. 過去에는 輸入管制區域을 通過할때 스웨덴官吏가 “輸入許可”라고 새긴 스템프를 받아야 하였던 까닭에 몇 일동안 冷藏室에 묶은 後에 出庫되어 檢印을 밟아야 하는 不便이 있었지만 今日는 輸出業者の 스템프, 或은 商標가 鮮明히 읽을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다른 檢印이 必要없게 되었다.

冷凍肉의 輸入時は 그 封개위에 스템프를 찍어야 하되 包裝單位하나 하나에 빠짐없이 찍어야 하고 萬一 여러 包裝單位가 하나의 容器에 들어있을 때에는 그 容器가 商標 또는 템플附着時부터 密閉되어 있었다는 것이 立證되면 그 容器위에만 스템프를 받으면 된다. 容器위에는 檢査를 施行한 나라의 國名 屠殺場或은 管理處의 番號와 名稱을 表示하여야 한다.

IV. 輸入食品의 法律適用

美國의 경우 美國에 輸入된 食品은 第一次로 聯邦政府의 處分을 받어야 한다. 通關이完了된 後 輸入 食品은 財務部가 出庫指示할 때까지 一旦 保稅倉庫에 保管된다. 食品은 食品醫療品, 化粧品을 對象으로 하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肉類檢査所, 其他 必要한 關係機關의 檢査를 받어야 한다.

日本의 경우 輸入品은前述한 食品衛生法의 適用을 받는다. 同法 第16條, 2項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되고 있다. 「販賣의 目的으로 또는 事業上 使用할 目的으로 食品添加劑, 器具, 容器를 輸入하려고 하는者は 保健厚生省이 定하는 바에 따라서 한件마다 申告 하여야 한다.」 食品衛生法의 履行을 為하여 食品衛生檢查制度가 同法에 規定되어 있는데, 1963年에 그 數는 5,000名에 達하였지만 激增하는 事務量을 変화수가 없어서 大幅增員을 計劃하고 施行할려고 하였지만 有資格者의 缺乏때문에 支障을 받고 있는 形便이다. 食品衛生檢查官은 日本內 主要港口에 位置하는 約 800個所의 駐屯所에서 輸入食品檢查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動物性食品을 輸入하였을 때에는 「獸醫學의 輸入統制에 關한 法令」과 「肉類生產品 및 動物脂肪의 輸入統制에 關한 勅令」과 또 獸醫廳의 一連의 命令이 規制하는 輸入機査를 거쳐야한다고 되어 있다. 獸醫學의 輸入統制의 目的是 前에 스웨덴國內에 啓된 家畜流行病 或은 其他 傳染性疾病을 傳播할 憂慮가 있는 動物, 肉類의 輸入을 禁止하는 데에 있다.

獸醫廳은 獸醫廳이 發給하는 特別免許敘이 는 食品을 輸入할 수 없다고 命할 수 있다. 그 要免許品目의 一覽表는 獸醫廳과 關稅廳에서 發表하기로 되어 있다. 近代的 食品工業技術이 生產하는 食品에 對하여 繼續하여 免許制度를 適用할 可能성이 있음으로 세로운 食品統制法의 提案이 앞으로 豫想된다. 이 세로운 食品統制法에서는 輸送 冷凍에 關한 規定은 더욱 嚴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自體의 冷凍食品產業은 生產者로부터 消費者에 이르는 사이의 冷凍食品取扱과 輸送에서 模範的인 業績을 開拓하였음으로 新法令이 規定하는 藩準을 充足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